

제 호

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서

1. 명 칭:
2. 대 표 자:
3. 소 재 지:

「식품위생법」 제70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5제3항에 따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직인